

# 정 관

제	정	2005. 02. 16.
개	정	2006. 01. 16.
개	정	2006. 04. 06.
개	정	2006. 10. 12.
개	정	2006. 12. 27.
개	정	2007. 01. 11.
개	정	2008. 07. 02.
개	정	2008. 10. 14.
개	정	2009. 02. 09.
개	정	2009. 12. 29.
개	정	2010. 07. 08.
개	정	2010. 09. 17.
개	정	2011. 12. 07.
개	정	2011. 12. 30.
개	정	2014. 02. 02.
개	정	2015. 03. 30.
개	정	2015. 10. 12.
개	정	2017. 12. 29.
개	정	2018. 01. 31.
개	정	2018. 05. 29.
개	정	2019. 12. 30.
개	정	2023. 12. 26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연구원은 재단법인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5.10.12.>

**제2조(목적)**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·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·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

정관

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10.14.,2023.12.26>

**제3조(소재지)**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취팔취로 1696에 둔다. <개정 2006.1.16., 2011.12.7.,2023.12.26>

**제4조(사업)**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도정발전에 관한 중·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
2. 지역경제,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<개정 2023.12.26.>
3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국·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
4.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
5.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·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
6.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
7. <삭제 2006.10.12.>

## 제2장 자산 및 회계

**제5조(재산)** ①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자가 설립 당시에 출연한 출연금(10억원)
2. 전북특별자치도, 국내외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, 개인으로부터 양도나 기부 받은 토지 및 건물, 유가증권, 기타 물품 <개정 2023.12.26.>
3.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
4. 운영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②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
**제6조(기금의 설치 및 관리)** ①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고 관리한다.

②제1항의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③제1항의 기금은 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과 잉여금, 기금의 과실수입 등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06.12.27.>

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7조(운영재원)** ①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, 기금의 과실수입, 용역수탁수입, 출판물 판매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23.12.26.>

②전북연구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12., 개정 2019.12.30., 개정 2023.12.26>

1. <삭제 2019.12.30.>

2. <개정 2009.12.29.> <삭제 2019.12.30.>

3. <삭제 2006.10.12.>

③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26.>

④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, 통지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받 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 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12.26.>

**제8조(기본재산의 처분제한)**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 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.<개정 2023.12.26.>

**제9조(사업연도 및 회계)** ①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.

②연구원의 회계는 정부회계의 원칙에 따르되, 예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0조(사업계획 등)** ①원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,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6.12.27., 2009.12.29., 2023.12.26>

②원장은 여성정책분야 연구와 관련해서는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결정한다.

**제11조(결산보고)** 원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출연연구원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의한 관계서류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12.26.>

**제12조(잉여금 처리)** 매회계년도의 잉여금은 기금으로 전입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사업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2.29.>

### 제3장 임원 및 직원

**제13조(임원)** ①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원장 1인
3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원장포함) <개정 2008.10.14.>
4. 감사 2인

②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.

**제14조(이사의 선임)**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여성 인사를 적극 영입한다.

②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1. <삭제 2008.7.2.>

2. 원 장

3. <삭제 2010.7.8.>

4.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<개정 2006.4.6., 2006.10.12., 2018.1.31., 2023.12.26>

5. <개정 2008.10.14.> <삭제 2023.12.26>

③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. <개정 2015.3.30., 2023.12.26>

④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다. <개정 2015.3.30., 2015.10.12.>

**제15조(임원의 임기)** ①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16조(이사장)**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06.10.12.>

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③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,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6.12.27.>

**제17조(감사)** ①감사는 공개모집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3.30.>

②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감사는 연구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,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26.>

**제18조(원장)** ①원장은 공개모집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원장 임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3.30., 2017.12.29.>

## 정관

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,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원의 사무를 집행한다.

③원장은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경영의 책임을 진다.

④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6.4.6., 2006.10.12., 2007.1.11., 2009.12.29.>

**제18조의2(부원장)** <신설 2011.12.30.> <삭제 2015.3.30.>

**제19조(정책연구소장)** ①<개정 2008.10.14., 2010.9.17., 2011.12.30., 2014.2.2., 2018.5.29.><삭제 2023.12.26.>

② <삭제 2023.12.26.>

③ <삭제 2010.9.17.>

**제20조(임원의 보수)** ①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.

②원장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21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**제22조(직제)** ①연구원에 연구부서와 행정부서를 둔다. <개정 2010.9.17.>

②전항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부설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9.2.9.>

**제23조(직원)** ①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되,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채용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한다. <개정 2008.10.14.>

②직원의 임면, 승진, 보수, 복무기준, 업적 평가기준과 방법, 인사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이 사 회

**제24조(이사회)** ①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③당연직 이사는 소속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**제25조(이사회 의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주요사업계획 및 변경
2. 예산 및 결산
3. 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의 변경
5.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정
6. 주요재산의 처분 및 기본재산의 증감
7. 연구원의 해산
8.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9. 기타 이사장 및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26조(이사회 의 소집)**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연연구원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7.1.11.>

**제27조(의결정족수)**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연구원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이사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

정관

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**제28조(의결권 제한)**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

**제29조(회기)**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,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.

**제30조(의사록)**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연구자문위원회

**제31조(연구자문위원회)** ①연구원의 발전방향 및 주요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32조(정관의 변경)**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23.12.26.>

**제33조(규정의 제정 등)** ①연구원의 기금 및 인사에 관한 규정과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·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23.12.26.>

②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

**제34조(해산)** ①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12.26.>

②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.<개정 2023.12.26.>

**제35조(공고)**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이 연구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 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.

②연구원 설립당시 출연연구원법에 의거 임명되는 이사장 및 이사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③연구원 설립 이전 “재단법인 전북연구원”과 “재단법인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”의 목적사업은 본 연구원의 연구 활동으로 본다.

<개정 2015.10.12.>

## 부 칙 <2006.1.16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<2006.4.6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정관

**부 칙** <2006.10.12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06.12.27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07.1.11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08.7.2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08.10.14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09.2.9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09.12.29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0.7.8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0.9.17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기 임용된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임기는 현 임기 만료일까지 한다.

**부 칙** <2011.12.7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1.12.30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4.2.2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5.3.30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5.10.12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정관

**부 칙** <2017.12.29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8.01.31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8.05.29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9.12.30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20.12.30.>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23.12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날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1. 제2조 “전북특별자치도”
2. 제5조제1항2호 “전북특별자치도”
3. 제7조각 항 “전북특별자치도”
4. 제8조 “전북특별자치도”

5. 제10조제1항 “전북특별자치도”

6. 제11조 “전북특별자치도”

7.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3항 “전북특별자치도”

9. 제32조 “전북특별자치도”

10. 제33조1항 “전북특별자치도”

11. 제34조제1항 및 제2항 “전북특별자치도”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본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

(1)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제12조제2항 “전라북도”는 “전북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(2)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항 “전라북도”는 “전북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(3)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제2조제2호 및 제3조 “전라북도”는 “전북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(4)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제3조제1항1호 및 2호, 제10조제2항 “전라북도”는 “전북특별자치도”로 한다.